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계획
수립 매뉴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계획 수립 매뉴얼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안전 및 보건 확보계획 수립에 필요한 일반적인 상황을 예시로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버스가 사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6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제1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01 개요 · 6
- 02 중대산업재해 · 8
- 03 중대시민재해 · 14
- 04 사고발생 시 대응 · 17

제2부 안전 및 보건 확보계획 수립 요령 및 작성 예시

- 01 안전 및 보건 확보계획 수립 요령 · 22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 22
 - 의무사항별 세부 준비사항 · 23

작성 예시 안전 및 보건 확보계획 · 37

- 1. 일반현황 · 38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38
- 3.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 64
- 4. 행정기관 명령 이행 관리계획 · 65

제3부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 1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1. 개요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
4. 사고발생 시 대응

01 개요

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제정 목적(제1조)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1.26. 제정, 2022.1.27일부터 시행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제2조 제9호)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그 기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의미(주로 대표이사)

종사자의 범위(제2조 제7호)

-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이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의 관계에 있는 자

적용범위 및 시기(제3조 및 부칙 제1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
- 2022.1.27일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1.27일부터 시행

나. 중대재해

중대재해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중대산업재해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02 중대산업재해

가. 중대산업재해 정의(제2조제2호)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로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직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나.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제4조, 제5조)

- (제4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해야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다음과 같음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발생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 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5조)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함,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상시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두어야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를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할 것(위험성평가 실시 내지 실시결과와 보고로 대체 가능)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등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용도별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이들에 대한 **평가 관리절차**를 마련할 것(반기 1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관리자**를 배치할 것

- **종사자 의견을 듣고 이를 개선**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등으로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대체 가능)

- **재해대응매뉴얼에 따라 사고 등을 조치**하는지 반기1회 이상 점검

- 도급 등을 하는 경우 **선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② 재해발생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탁점검 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을 것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시 인력배치 또는 예산 추가 편성 및 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는지 반기1회 이상 점검
- 실시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행의 지시, 예산확보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 관계법령 : 여객법,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 관계법령 중 노선버스사업자가 준수할 사항 : 별첨

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시 고려 사항(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전사적 안전보건관리 목표 및 중·장기 전략 설정
-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 내부 시행 및 이행 달성 정도의 평가 시스템이 구축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

-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
 - 안전관리인력이 총 3명이상이며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 전담조직은 2명 이상으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 인원으로 구성
- 전담조직 부서장과 부서원 모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관리
-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 안 됨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 마련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행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점검을 한 것으로 봄(시행령 제4조제3호)
- 협력업체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참여
- 위험 개선 결과의 이행 수준 검토 및 관리체계 보완
 - ①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②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보수
 - ③ 작업 방법 및 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에 각각 유해·위험요인 확인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 예산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과 연계
-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개선,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항목을 포함
- 예산별 용도 내 집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 및 예산부여, 안전보건관리자 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권한 및 예산을 부여하는 역할과 책임 및 전결규정 포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평가기준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평가를 반기1회 이상 진행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업무수행시간보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법정인력선임 현황
-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
- 사업장별 독립적 안전·보건 업무 수행체계 구축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 종사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

급박한 위험시 대응절차 등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대응절차 매뉴얼 마련
- 매뉴얼에 작업 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
-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내용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 절차 등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기준 미달 시 실질적으로 재계약 거부 또는 입찰탈락 등의 조치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 위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

라.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분석, 현장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
-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및 대체하고 통제방안을 검토해 세부적 개선대책을 마련

마.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개선·시정 등 명령사항 이행

- 보고 절차 마련
- 보고 및 이행확인 시스템을 구성하여 적절히 활용

바.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시행령 제5조)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 이행여부 점검 및 결과보고

- 경영책임자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이행 사항의 점검 또는 보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을 경우 점검 결과 보고시스템 구축
- 점검 또는 보고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내용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 직종별(운전직, 정비직, 관리직 등) 안전보건교육 이수관리체계 마련
- 협력업체 선정 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교육 관리체계 평가기준의 마련
-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통제 시스템 마련
-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력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

-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인력배치 및 예산편성·교육 등에 반영
- 안전보건담당임원이 관련 권한을 보유
- 내부 절차상 필요한 조치사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보완할만한 시스템 마련

03 중대시민재해

가. 중대시민재해 정의(제2조제3호)

-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대중교통수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노선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시외·고속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의미

나. 중대시민재해 해당요건

- 중대시민재해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 설계·제조·관리상의 결함이란 승합자동차 그 자체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용자 부주의가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기업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중대시민재해가 아님
 - ☞ 관리상 결함이란 자동차 검사정비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것을 포함(예 : 타이어, 브레이크 등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

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수행 인력
- 안전계획 이행 인력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사항 수행 인력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 실시 예산
- 안전계획 이행 예산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사항 수행 예산

안전점검 계획수립·수행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 계획수립·수행

안전계획 수립·이행

-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장비확보포함)에 관한 사항
- 유지·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조치요구, 보수·보강 등 개선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조치
- 비상대피훈련 실시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마련·이행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라.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분석, 현장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과 발생원인을 파악
-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및 대체하고 통제방안을 검토해 세부적 개선대책을 마련

마.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개선·시정 등 명령사항 이행

- 보고 절차를 마련
- 보고 및 이행확인 시스템을 구성하여 적절히 활용

바.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시행령 제11조)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 이행여부 점검 및 결과보고

- 경영책임자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이행 사항 점검 및 보고시스템 마련
- 반기 1회 이상 의무 이행 점검 업무를 자체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 직종별(운전직, 정비직, 관리직 등) 안전보건교육 이수관리체계 마련
- 협력업체 선정 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교육 관리체계 평가기준의 마련
-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통제 시스템 마련
-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여부 등을 점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력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

-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인력배치 및 예산편성·교육 등에 반영
- 안전보건담당임원이 관련 권한 부여
- 내부 절차상 필요한 조치사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보완할만한 시스템 마련

04 사고발생 시 대응

가.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 예방조치 입증자료 준비

- 사고발생시 해당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인력·예산·점검체계의 구축 여부
 - 각 사업장에서 이전에 유사사고 발생 시 조치한 실적
 - 고용노동부지청 등에서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 현재 개선·유지되고 있는지
 - 재해유형별 예방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는지 여부 등
- 중대재해 발생시점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들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한 노력

을 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는지 상시 관리하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보관

나. 의무준수 입증을 위한 준비자료 목록

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의 이사회보고 및 결과 기록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안내, 공고, 교육 등 - 각 사업장 게시 현황 증빙 - 경영목표 평가 보고서 - 홍보실적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현황표 - 업무분장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사업장 위험성평가 계획서 - 이행상태 점검결과 보고서 - 점검결과 조치 관련 문서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예산 편성기준 -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련 예산 - 집행(결산)결과 보고서
법정관리자 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배치, 권한, 책임 관련 내규 - 업무수행평가기준 및 절차 문서 - 업무수행 평가결과
전문 인력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전문 인력 선임신고서 - 전문 인력 직무교육 이수증 - 전문 인력 직무, 업무형태별 배치기준 관련 문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운영 결과 서류 - 개선의견 수렴 결과서류 - 협력업체 및 기타 종사자의 의견청취방법 확인 - 종사자 의견 수렴조치 결과 내역서
급박한 위험시 대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대응 매뉴얼 및 결재서류 -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 서류(예 : 교통사고, 정비 등) - 대응훈련 등 점검 서류 - 개선방안 도출 및 검토 여부를 입증하는 문서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 시 수급업체 평가기준 - 평가결과보고서 점검 - 기준미달 수급사 조치 관련 문서

②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사업장별 재해보고절차 서류(종사자 전파)
- 대책수립 및 이행추진체계의 적절성 점검계획 서류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완료 서류

③ 행정기관 명령 이행 관리

- 행정기관 시정지시 목록 및 서류
- 이행결과 관련 문서(해당 행정기관에 제출 서류)
-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안전보건법령의무이행여부 반기1회 이상 점검 및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계획 수립문서 - 점검결과 보고관련 서류 - 점검결과 조치 및 이행상태 확인 서류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력배치 및 예산추가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내역 및 조치 결과 서류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 및 관련 예산 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 계획 서류 - 유해, 위험작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협력업체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서류 - 교육이수 확인보고서
안전보건교육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예산확보 등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관련 서류(관련 예산 등 보완입증)

제 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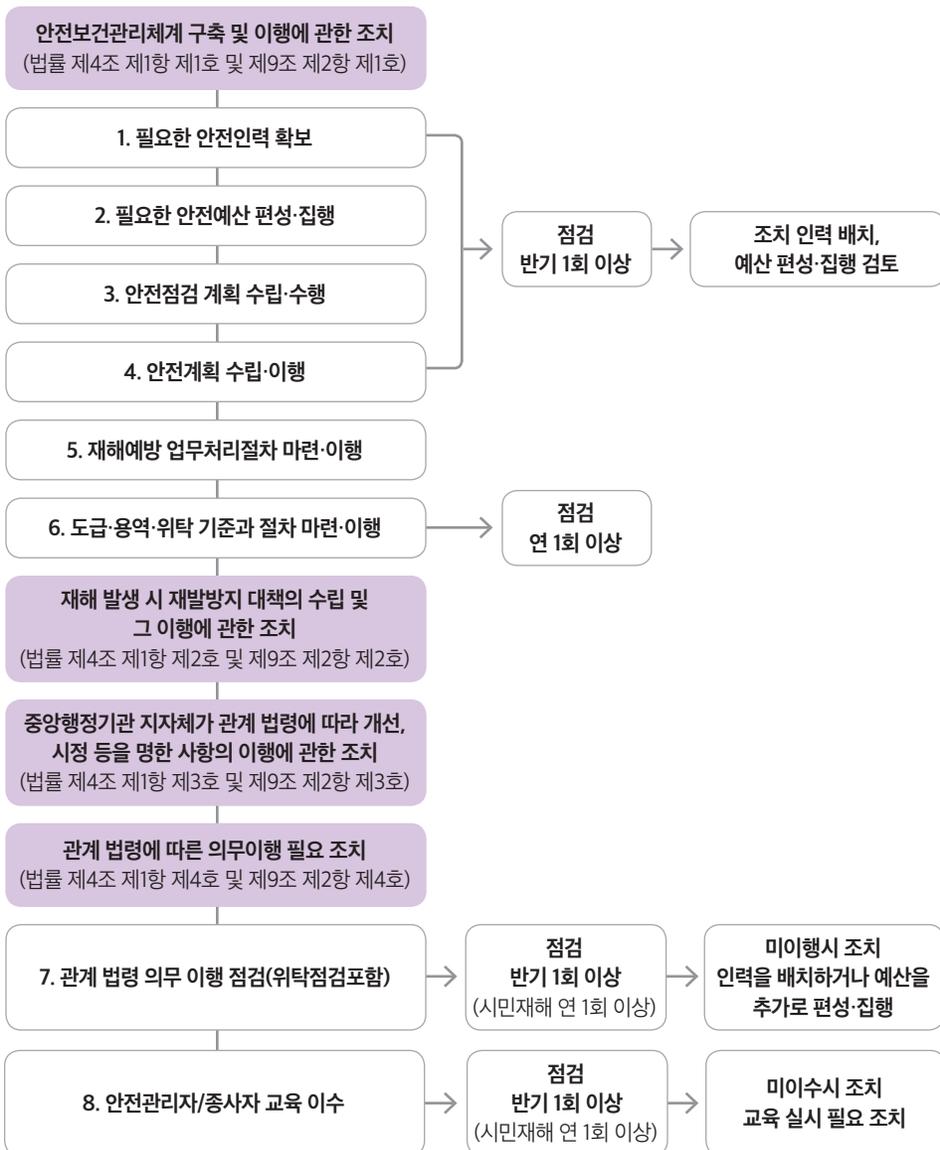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계획 수립 요령 및 작성 예시

1. 안전 및 보건 확보계획 수립 요령

작성 예시 안전 및 보건 확보계획

01 안전 및 보건 확보계획 수립 요령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 의무사항별 세부 준비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 버스(시외버스)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이 있다.

※ 철도 분야(도시철도 차량, 철도 차량) : 철도안전법

항공 분야(운송용 항공기) : 항공안전법

1.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9조 제2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 업무의 수행 및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그 밖에 이용자 등의 안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① 인력·예산확보 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하여 하여야 한다.
 - 다만, 공중교통수단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도 다를 수 있으므로 안전인력의 수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수

행해야 하는 안전업무를 제시하여야 한다.

- 경영책임자 등은 각 기업 또는 기관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편성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이를 수행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공중교통수단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도 다를 수 있으므로 편성해야 할 안전예산의 규모를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예산을 투입할 안전업무를 제시하여야 한다.
 - 경영책임자 등은 각 기업 또는 기관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점검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인력확보 및 예산 편성·배치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4조 제6호, 제5조 2항 및 제10조 제5호)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인력에게 부여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시행령 제4조 제6호, 제5조 2항 및 제10조 제6호)
-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예산에는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비용, 안전조치 비용, 인건비 등이 있음

의무이행 사항

- 기업은 다음의 의무사항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관련조항	이행사항
교통안전법	제56조의2	교통안전 체험교육
	제55조	운행기록장치 장착
	제55조·시행령 제45조	운행기록보관
	제55조·시행규칙 제30조	운행기록 제출 및 활용
	제21조·시행령 제18조	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
	제54조의2·시행령 제44조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시행규칙 제49조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채용여부
	제24조·시행규칙 제49조	운전정밀검사 수검여부
	제25조·시행규칙 제58조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실시 여부
	제25조·시행규칙 제58조	운전자 보수교육 실시 여부
	제19조·시행령 제11조	중대한 교통사고의 보고
	제21조·시행규칙 제44조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 신호등 부저 작동 여부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
	제27조의2	좌석안전띠 착용의무화 이행상태 점검
	제21조·시행규칙 제44조	앞바퀴 재생타이어, 튜브리스타이어 사용
	제21조	천연가스자동차 점검 여부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정상 작동
	제21조·시행규칙 제44조	운수종사자 휴식보장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
	제29조	속도제한장치 장착 소화기 관리 상태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 사업자 의무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필요

2.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계획 수립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내제된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대상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점검의 계획 수립과 수행에 관련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 또한 점검 또는 보고결과에 따라 안전점검 이행을 지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점검 사항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계법령	관련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정기검사	- 1년 단위(차령 8년 이하) - 6개월 단위(차령 8년 초과)

3. 안전계획 수립

경영책임자의 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연 1회 이상의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반기 1회 이상** 안전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계획 내용

- 안전계획은 공중교통수단의 제원과 유형, 기업 또는 기관에서 그 운영·관리에 투입하는 안전 예산·인력, 대상에 대한 안점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대표이사의 이사회보고 및 결과 기록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안내, 공고, 교육 등
- 각 사업장 게시 현황
- 경영목표 평가 보고서 작성
- 홍보실적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활동

- 총괄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업무분장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 각 사업장 위험성평가 계획
 - 일반적으로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점검 또는 육안관찰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 또는 장마기간, 특별수송기간 등 공중교통수단의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 또는 안전 업무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재해 예방 및 이용안전을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육안관찰(수시점검)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이러한 점검·관찰 등을 통해 공중교통수단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이행상태 점검결과 보고
- 점검결과 조치

④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 안전보건 예산 편성기준
-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련 예산
- 집행(결산)결과 보고

⑤ 법정관리자 업무수행

- 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배치, 권한, 책임 관련 내규 마련
 - **경영책임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음
 - * 부서의 장이란, 부장, 팀장, 과장, 직장, 조장, 반장 등의 직함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 내에서 일정하게 분류된 부서의 직함자
 - **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란, 부서명칭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단위작업을 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6호 및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는 관련 업무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작업현장

을 순시하면서 불안전한 상태 또는 작업자들의 잠재된 위험성을 파악하고 시정해 주어야 하며 법령상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교육일지 작성
- **업무수행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실무적인 경험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표로 다음의 핵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계획 수립 등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를 적합하게 지휘, 감독하고 있는지 그 여부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여부
 - 관리감독자의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업무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함
 - ※ 다른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시에 병행하여 평가해도 됨
- **업무수행 평가결과**
 - 업무수행 평가결과를 기초로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미흡한 경우 개선조치를 마련해야 함

⑥ 전문 인력 배치

- **법정 전문 인력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20대 이상을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안전관리자** | 사업장 안전점검, 산업안전 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담당

· **보건관리자** | 근로자 건강관리·상담,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외상 등 환자치료, 응급처리, 질병자의 영양지도, 산업재해·물질안전 보건 자료관리 등 담당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으며 산업보건의 선임 여부는 기업에서 선택

· **교통안전담당자** |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를 바탕으로 다른 법령에서 산업보건의 배치에 관련해 다르게 정한 내용이 존재하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

- 해당 기업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에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나, 안전 경영의 측면에서 사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에 적합한 직무 수행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 보유자

-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은 각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 인력 직무교육 이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함**
 - 직무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뉘며 각 교육에 따라 교육시기 및 교육 내용 상이
 -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
 - ※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

⑦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운영
- 개선의견 수렴
 - 각 기업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요인,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과적으로 유해요인을 찾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의견 청취를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각 기업이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처가 있어야 함
- 협력업체 및 기타 종사자의 의견청취방법 제시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청취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근로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모든 근로자의 의견 청취가 어려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들었다고 간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이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는 별도로 의견을 청취하여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종사자 의견 수렴조치

- 각종 사고, 위험요소 확인활동 등을 통해 종사자의 의견청취, 의사소통 절차를 문서화 하고 그 기록을 해야 함
-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종사자의 제시 의견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청취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님

* 영업상 비밀을 해할 우려, 특정 업체 기계·기구 장비 구입, 과도한 예산요구, 근로조건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⑧ 급박한 위험시 대응절차

• 사업장 대응 매뉴얼 및 결재

-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피훈련(비상대응계획 등)을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예 : 교통사고, 정비 등)

- 교육훈련의 시간, 장소 및 훈련목표, 참여범위와 시나리오, 대피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대응훈련 등 점검

• 개선방안 도출 및 검토

- 교육훈련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대피훈련계획의 수정, 개선

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 절차

• 도급 시 수급업체 평가기준

- 제3자에게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수탁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안전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필요한 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안전관리역량은 수탁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이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양한 요소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조직인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훈련 등을 근거로 수탁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 항목 및 기준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중	하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 안전예산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래신고·보조절차 유무 - 재래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 평가항목별 배점 및 상·중·하의 배점은 기업 또는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평가기준·절차 점검
 - 연 1회 이상 평가 기준과 절차가 원활히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 점검 보고서 작성
- 기준미달 수급 시 조치 계획

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업장별 재해 보고(종사자 전파)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 신고 및 종사자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추진체계의 적절성 점검계획

-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또한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체계가 적절한지 점검할 수 있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계획

-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추진체계의 적절성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행정기관 명령 이행 관리

행정기관 시정지시 관리방안

- 행정기관의 시정지시 목록 및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행결과 관리

- 시정지시에 대한 이행결과 및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 시정지시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 이행여부 점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중대시민재해 연 1회 이상)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
- 이를 위해 **점검계획, 점검결과 보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력배치 및 예산추가편성

- 점검 또는 보고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
- 관련 예산 등 개선 계획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 및 관련 예산확보 등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이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중대시민재해 연 1회 이상)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 위험작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협력업체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
- 교육이수 확인보고서

작성 예시

안전 및 보건 확보계획

※ 제2부 첫머리에서 밝힌 '안전 및 보건 확보계획 수립요령'에 따라 각 사가 수립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계획'의 실제 작성 예시입니다. 이 예시를 기반으로 각 사 사정에 맞게 안전계획을 수립·작성하면 됩니다.

1. 일반현황

본사	
설립	
자본금	
종사자수	
연간매출	
사업내용	
차량대수	
노선연장	

2. 안전·보건관리체계

(1)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기본방침

- 사장(대표이사)의 주도적인 역할
- 전 종사원의 안전의식 고취
- 수시점검 및 개선
-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적극 공표

① 사장(대표이사)은 안전 확보가 사업경영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사내의 안전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② 또한 안전에 관련한 현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종사원에 대해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을 고취시킨다.
- ③ 수송안전에 관련한 계획 수립, 실행, 체크, 개선(Plan Do Check Act)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대책을 수시로 검토 수정함과 동시에 전 종사원이 하나가 되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④ 안전에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표한다.

추진목표

- ① 유책 사고건수 전년 대비 〇% 이상 감소
특히, 후진 및 우회전 접촉 사고건수 전년 대비 〇% 이상 감소
- ② 유책 인명 사고건수 전년 대비 〇% 이상 감소
특히, 유책 중대사고 제로
- ③ 자동차 정비 등으로 인한 사상자 제로

시행계획

- 교통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식을 주지하고,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 교통안전과 관련한 비용지출 및 투자를 적극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 교통안전과 관련한 내부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 교통안전과 관련한 정보의 연락체계를 확립하고, 사내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 공유한다.
- 교통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정확하게 실시한다.

(2) 안전·보건 확보 계획

기본계획

① 경영방침

- ‘안전은 모든 업무에 우선한다’는 경영방침을 견지하고, 전 종사원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한다.

② 사장 이하 임원의 직장 순시

-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기간 등의 아침조회 입회, 업무연수에 참석, 종사원에 대한 수시간담회를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현장과의 소통을 도모한다.

③ 사고정보의 공유

- 반기별 사고경향을 분석하고, 점호 시나 업무연수에서 사고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발방지대책 및 새로운 사고방지시책에 활용한다.
-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고일지를 작성하여 전 종사원에 대해 주지시키고,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④ 사고위험정보 수집과 공유

- 사고위험정보의 목적이나 유효성을 교육하고, 그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반기별로 분석하여 그 경향과 대책을 현장에 피드백 한다.
- 업무연수 등에 드라이브 레코더 영상을 활용하여 공감대를 형성한다.

⑤ 안전 관련 자료 수집 배포

- 유관기관에서 제작 배포된 안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전 종사원에게 수시로 배포한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등의 발간 배포자료를 적극 활용

- 필요 시 전문기관에 지도내용과 사고방지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을 의뢰한다.

⑥ 위험요소(장해물) 맵(지도)의 활용

- 사업구역내의 초등학교나 병원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표기한 장해물 맵에 사고 발생 지점이나 위험부분 등의 사진을 첨부해 알기 쉽게 제작·활용한다.

⑦ 무사고에 대한 표창제도 활용

- 무사고에 대한 표창제도(○○만km 연속 무사고 주행, 연도 목표 달성, 반별 ○○만 km 연속 무사고 주행, 무사고 운전자 표창)를 활용하여 운전자의 안전의식 고양에 활용한다.

안전교육 및 훈련

전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① 반별 업무연수

- 전 운전자를 대상으로 3개월에 1회, 30분 간 실시한다.(총 4회)
- 전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결과를 참고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실시한다.

② 모든 운전자에 대한 연수

- 3년에 걸쳐 모든 운전자(운행관리자 및 3년 미만의 운전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근속 5년 미만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 운행관리자와 함께 승차하고, 관리자를 교체해 가면서 면담을 실시한다.

④ 현장 사고방지 교육

- 전문 강사에 의한 사고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⑤ 적성진단(일반) 진찰과 카운슬링

- 일정표에 따라 3년에 1회 진찰을 반드시 실시한다.
- 진찰 결과에 따라 카운슬링으로 자신의 습관이나 개선점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에 활용한다.

⑥ 버스납치훈련

- 버스납치를 가정한 긴급대응체계의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특정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①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 가해 인신사고, 손해액이 큰 가해 대물사고를 유발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인신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안전교육을 승무 전에 실시한다.

② 신입 운전자에 대한 교육

- 사내에서 관련 법령·사내규칙 교육 및 운전의 기본훈련을 실시한다.
- 이후 지도승무원에 의한 운전·응대훈련을 실시한다.
- 적성진단(초임)을 검사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카운슬링을 실시한다.

③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육

- 60세에 달한 운전자에 대해 1년 이내에 적성진단을 검사토록 하고, 이후 3년에 1회의 검사를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 검사결과에 따라 카운슬링을 실시하고, 가령(加齡)에 따른 신체기능의 변화에 따른 운전조작을 지도한다.

④ 입사 3년 이하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

- 입사 후 3개월, 입사 후 12개월, 입사 후 36개월에 연수를 실시하고, 안전의식 함양, 운전조작 향상을 도모한다.

운행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 운행관리자의 책무나 법령·교통안전 확보에 관한 지식 습득 및 엄정한 점호 집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교통사고 방지대책

음주운전 사고 방지대책

① 운전자의 음주상황 등과 관련한 실태파악 및 적절한 대응

- 관리자의 개별면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건강진단결과 및 평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운전기록증명서를 실태파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를 관리자가 파악한 경우 즉각 승무정지를 행함과 동시에 전문의에 의한 진단, 카운슬링, 치료 등 적절한 처치방법을 강구한다.

② 엄격한 점호 실시(엄격한 음주체크 실시)

- 출·귀고 시 전 운전자에 대해 알코올 검지기를 이용하여 체크한다.
- 관리자의 불시 동승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음주유무 확인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재발방지 의식의 고양 등 직원에 대한 지도·계몽활동 충실

- 운전자 등의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문제의식의 공유를 도모함과 동시에 직원에게 필요한 대책 등의 제언을 구한다.
- 음주의 영향·폐해 등과 관련한 연구자료, 홍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 ※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등의 발간 자료 적극 활용
- 노동조합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④ 버스이용자에게의 정보제공 및 이해를 구하기 위한 조치

- 버스이용자 등에 대해 음주운전방지대책의 실시 상황이나 재발방지 결의 등을 차내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한다.

졸음운전 사고 방지대책

① 사전예방대책 : 승무운전자의 신체건강상태 유지를 위한 조치사항

【 단기대책 】

- 운전자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건강상태, 휴식상태를 체크한다.
 - 각종 질환 여부, 졸음 유발성 약물 복용 여부
 - 수면부족, 심한 피로, 스트레스 여부 등
- 졸음운전 관련 연구자료,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 운전 중 졸음예방법 및 졸음 시 응급조치 방법
 - 식곤증 예방법
 - 신체건강유지를 위한 자기 생활관리 철저 등
 - ※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등의 발간 자료 적극 활용

【중장기대책】

- 운전자 연속운전시간 감축 및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 부족 운전자 총원 및 자동차 운행기록계 관리를 강화한다.
- 운전자 건강진단 시행을 통해 만성피로 및 질병을 관리한다.

② 운전 중 운전자의 대책 : 운전자가 졸음을 감지할 경우 조치사항

- 운전자가 운행 중 졸음감지 시에는 정차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정차가 어려울 경우에는 통풍, 세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통풍, 세안	- 창을 연다. 차가운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
음료수, 껌	- 커피나 냉수를 마신다. 껌을 씹는다.
운동	- 차에서 내려 가벼운 체조를 하거나 차량점검을 한다. - 차량을 세워 바람을 쐬고 차량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운전

- 운전자의 조치사항 실행을 위해 물수건, 커피, 냉수, 껌 등을 차내에 상시 비치한다.

특별교통안전대책

【대상】

- 설 및 추석 연휴 특별수송기간
- 하계휴가철 특별수송기간

【중점 추진사항】

- 여객수송력 최대 확보
- 운전자 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 수송장비 점검 및 교통안전 취약지점 점검, 보수(요청)
- 교통안전 순찰 지도반 구성 운영
- 심야도착 연계수송을 통한 서비스 향상 등

행락철 교통안전대책

【 대상 】

- 봄, 가을 행락철

【 중점 추진사항 】

- 운전자 교육 강화
-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예방
- 좌석안전띠 착용준수 홍보
- 차량정비 확인 철저
- 안전지도 순찰 강화

동절기 교통안전대책

【 대상 】

- 겨울철 폭설, 기온강하 대비

【 중점 추진사항 】

- 겨울철 사고다발지점 및 취약지점에 대한 숙지 교육
- 폭설, 결빙에 대한 대응조치
- 사고발생 시 조치요령 숙지
- 차량점검 강화
- 안전지도순찰 강화

CNG버스 안전대책

- 하절기 CNG자동차 특별 안전점검 시행
- 자체 점검 계획수립 시행
 - 국토부의 점검에 대한 사전점검

정비직 종사자에 대한 유해요인 및 개선계획

주요 업무

- 차량의 일상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 엔진오일 및 필터교환,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타이어 펑크 수리 및 교체
- 냉각수, 브레이크오일, 램프, 부동액, 에어컨 가스 등의 보충 및 교환

유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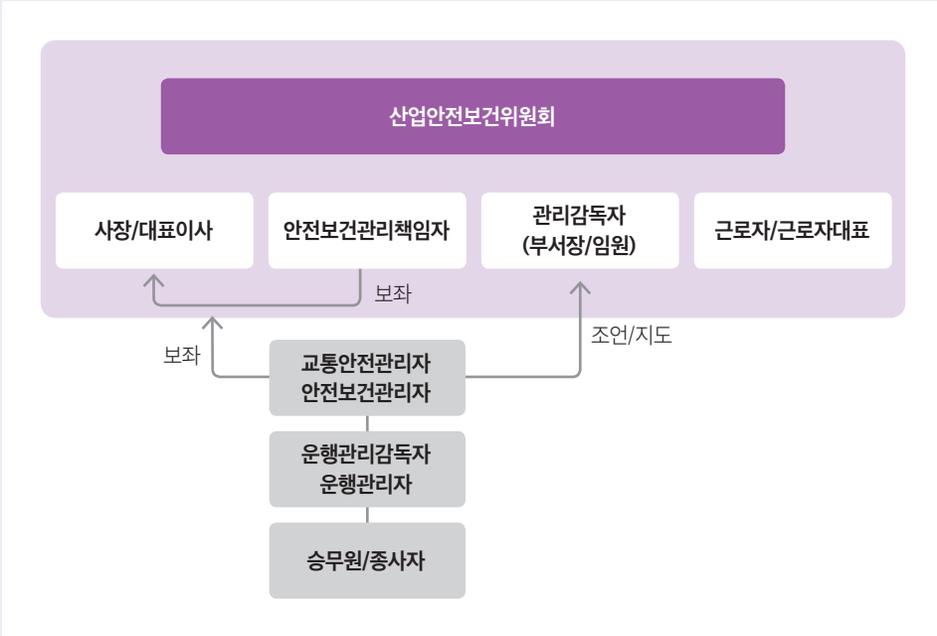
- 리프트 작업 시 자동차 하부에 손이나 신체 등이 끼일 위험
- (부자연스러운 자세) 대부분 리프트를 이용한 작업으로 중량물 들기 작업은 제거된 상황이나 좁은 작업공간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발생
- (과도한 힘) 오래된 차량의 경우 부식 등으로 볼트해체 시 망치작업, 약삭 작업 등으로 기계 장치를 손목형으로 들고 작업하기 때문에 과도한 힘 요구됨

개선계획

- 작업환경개선 계획
 - 리프트작업 시 단독 작업 금지
 - 부자연스러운 자세(허리굽힘 팔 뻗음) : 높낮이 발판 마련
 - 과도한 힘 : 손목 및 허리 보호구 지급
- 관리적 개선 계획
 -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
 - 가능한 한 들지 않고 미는 방식으로 작업개선

(3)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활동

안전보건 전담조직 및 지휘명령계통



【 안전보건 전담조직도 】

업무분장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재의 경우는 상무/○○○○부장 또는 그 권한대행자)는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 ② 교통안전관리자는 상사의 지시를 받아 영업소장을 통하거나 직접 운영관리자 등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관리업무 전반을 처리한다.
- ③ 운영관리감독자(운영관리감독자 부재의 경우는 운영관리자)는 교통안전원 또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처리한다. 단, 중요사항이 발생한 때는 상무/○○○○부장 또는 그 권한대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 ④ 운영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운영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보조자는 운영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운영관리업무의 일부를 담당한다.

⑤ 승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운행관리자 등의 지시를 준수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4)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계획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 본 사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건으로 사고율은 ○%임. 이는 전국 시외버스 평균 ○%에 비해 적은/많은 수준이다.
- 같은 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수는 총 ○명으로 연 대당 ○명 수준임. 이는 전국 시외버스 평균에 비해 적은/많은 수준이다.
- 또한 사망자수는 최근 3년간 총 ○명으로 연 대당 ○명에 해당되며, 전국 시외버스 평균 ○명 비해 적은/많은 수준이다.

구분	계약대수 (대)	발생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	
		건	사고율(%)	인	발생률(%)	인	발생률(%)
전국 (시외버스)							
우리 회사 (시외버스)							

최근 3년간 법규위반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수

- 최근 3년간 법규위반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가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를 차지하고 있다.
- 사상자수에서는 ○○○가 가장 많은 부상자(○명, ○%)를 냈으며, 사망자는 ○○○가 ○명(○%)를 냈다.

구분	발생건수(건)	경상자수(인)	중상자수(인)	사망자수(인)
안전운전불이행				
안전거리미확보				
신호(지시)위반				
전방주시태만				
진로변경방법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중앙선침범				
급제동금지위반				
진로양보의무불이행				
추월방법위반				
끼어들기금지위반				
서행의무위반				
주정차방법위반				
보도침범				
속도위반				
음주한계이상				
스쿨존내위반				
고의사고				
음주한계미만				
기타				
계				

위험성 평가 계획(위험운전행동 분석)

- 일반적으로 위험운전행동과 교통사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분기별로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초로 안전교육 및 체험교육 등을 실시한다.
- 데이터 분석은 개인별로 분석하여 관리하며 총괄하여 회사 전체의 변화추이를 살펴 대책을 마련한다.

이행상태 점검

① 위험운전행동 개선 여부 확인

- 운행기록계 분석을 통해 100km 당 위험운전 횟수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도·교육을 실시한다.

(단위 : 회/100km)

구분	과속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정지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U턴	급앞지르기	급진로변경	계
전체											
○○○											
○○○											
○○○											
⋮											

② 기타사항

- 교통안전에 관련한 계획 이행 상황에 대해 매월 사고방지대책회의에서 확인과 동시에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공문서의 관리에 대해 적어도 연간 1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교통안전에 관련한 내부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필요 시 긴급히 교통안전에 관련한 내부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적어도 반기 1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교통안전에 관련한 내부점검을 실시한다.

- 안전총괄관리자는 내부점검이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사장(대표이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강구한다.

개선조치

① 운전자 준수사항 주지

- 개문발차, 정류소 무단통과 등의 금지, 안내방송 시행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주지시킨다.

② 운전자의 교통안전기록관리

-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기록 관리한다.

③ 운전자 교육 철저

-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등 법정교육을 내실 있게 철저히 실시한다.

【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

구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가. 신규교육	-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	16	-
나. 보수교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수시
다. 수시교육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시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3(제58조의제2항 관련)

자동차 안전관리 및 정비

- **정기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철저히 준수한다.
 - 차령 8년 이하 : 1년 단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단위
- **정비체제** | 일상 점검, 법정 점검 및 그 밖의 유지보수를 자사 정비공장에서 전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법정 점검과 더불어 자사 기준의 점검항목을 정하여 안전운행이 가능토록 사전예방조치를 충실히 이행한다.
- **정비기술 향상** | 엔진 등 중요 부품의 분해 수리 실시를 위해 자동차 제조사 협조 하에 정비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차량의 리뉴얼** |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체, 차내, 주행 장치의 리뉴얼을 자사 공장에서 실시한다.

(5) 안전 관련 투자계획 및 집행, 관리

예산편성 기준

-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한다.
- 예산 편성 시 급격한 지출의 증가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투자계획

① 교육투자

-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위해 전문 강사 초빙,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② 설비투자

- 안전향상을 위해 신차 도입 시 후방카메라, 사이드 언더 미러, 좌회전 알람을 설치한다.
-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보유차량 ○○대 전 차량에 장착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유지관리를 강화한다.

집행실적

【 2021년도 실적 】

- 체험교육 ○○○원
- 적성검사기기에 의한 적성진단 및 카운슬링 ○○○원
- 위기상황 영상의 평상시 시청환경 도입 ○○○원
- 카메라 도입 예정(2023년도 하반기) ○○○원

집행상황 점검

- 안전·보건 관리자는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투자 집행상황을 정리해 경영 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보고를 받은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6) 법정관리자 업무수행

- 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배치, 권한, 책임 관련 내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내규를 둔다.

※ 각 사별로 내규(內規)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업무수행 평가기준 및 절차

-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반기 1회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과 요소	평가기준	등급별 점수	교과점수 (1,2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충실도	- 안전보건계획 수립 등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를 적합하게 지휘, 감독하고 있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받고 적합한 용도로 집행의 총괄 관리 상태		
	- 연간 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등 산재예방계획 수립의 총괄 관리 상태		
	-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안법 제25조, 제26조) 작성 및 변경의 총괄 관리 상태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총괄 관리 상태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의 총괄 관리 상태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의 총괄 관리 상태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의 총괄 관리 상태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의 총괄 관리 상태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의 총괄 관리 상태		
	- 위험성평가의 실시의 총괄 관리 상태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의 총괄 관리 상태		

고과 요소	평가 기준	등급별 점수	고과점수 (1,2 차)
관리감독자의 업무 충실도	- 관리감독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역할을 수행 하려고 노력하는지 여부		
	-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받고 적합한 용도로 집행 하는 관리감독 상태의 적정성		
	-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업무의 적정성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상태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상태		
	-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상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역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수준		
	-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상태		

• 업무수행 평가결과

- 업무수행 평가결과를 기초로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능력의 적정성을 평가 하고 미흡한 경우 전문교육 등을 이수토록 한다.

(7) 전문 인력 배치

-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교통안전담당자를 ○명 지정한다.(선임신고서 구비)
-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교통안전관리자로 한다.(자격증 비치)
- 교통안전담당자는 사업장 안전점검,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재 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 근로자 건강관리·상담, 보건교육, 산업재해·물질안전 보건 자료관리 등의 보건 관련 업무는 교통안전담당자가 겸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협조를 받는다.

(8)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개선의견 청취

① 종사자 의견

- 운행 또는 업무 등에서 발생한 유해위험성 관련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보의무 및 관리상의 조치 방안
- 안전보건 방침, 안전보건 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에 관련된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활동과 관련한 개선사항, 결과 및 건의사항
-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반의견, 제안 등

② 협력업체 및 기타 종사자의 의견청취

- 이용자 등 시민의 의견이나 관련 단체의 요청사항
- 회사와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요청사항
- 고객의 전화, 서신, 신고 등의 의견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의견사항

의견청취방법

① 내부 의견청취, 의사소통

- 종사자 및 협력업체, 기타 종사자의 의견은 전자우편, SNS, 건의함,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다.
-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경영활동 결과, 의견 및 건의사항을 안전관리자에게 전달한다.

- 또한 종사원의 의견, 교통사고 및 긴급사태 시 대응에 관한 의견 등을 접수하면 안전관리자에게 전달한다.
- 안전관리자는 조직 내에서 접수된 안전보건경영활동 결과,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접수, 검토한다.
- 안전관리자는 그 의견이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경영책임자에게 보고결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안전관리자는 의견의 처리결과를 교육, 훈련, 사보, 게시판, 공고간행물, 회의 등으로 종사원에게 전파한다.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종사원 등으로부터 개선된 안전보건에 관한 중대한 유해위험성에 대한 의견이 발생한 경우 개선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사고방지대책회의에서의 의견개선, 의결사항 중 중대재해예방 관련 의견은 우선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종사원에게 알린다.
- 제시된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일 경우 위험성 평가와 연계하고 필요시 수시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한다.

② 이용자, 시민, 거래처 등으로부터 의견, 민원 접수 및 전달

- 관리감독자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접수하면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한다.
- 안전관리자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접수하면 그 의견이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등 반영여부를 분석, 결정하여 조치한다.
- 안전관리자는 재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보건 의견은 관련 부서에 발생내역을 통보하여 원인 파악 및 개선조치를 의뢰한다.
-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 의견, 민원의 처리결과를 내·외부 종사원과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안전보건 의견 건의 및 제안 서류에 기록 관리한다.
- 안전관리자는 사내·외의 각종 안전보건 의견, 정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회신 전달한다.

- 안전관리자는 외부 의견개진,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외부 의견개진, 의사소통 내용 중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이용자, 시민, 거래처 등이 제출한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일 경우 위험성 평가와 연계하고 필요시 수시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한다.

의견수렴 조치계획

- **종사자** | 유해위험요인 등의 안전보건 의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의사소통으로 종사자 자신의 안전보건 확보 및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토록 한다.
- **안전책임자** | 모든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에 대한 의견청취를 취합,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반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조치한다.
- **경영책임자** |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직접 점검 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 받는다.
 -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계획을 강구토록 한다.

(9) 급박한 위험 시 대응

- 사고 속보 및 보고를 수리한 운수안전원은 안전총괄관리자 및 사내의 필요한 부서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중대재해(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신속하게 최고경영자의 결재를 받아 유관기관에 보고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사항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사고피해 최소화 및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다.

- 운전자는 이를 위해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 사고발생 시 운전자가 취할 조치과정은 다음과 같다.
 - **탈출** | 교통사고 발생 시 우선 엔진을 멈추고 연료가 인화되지 않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고차량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며 침착해야 한다.
 - **인명구조** | 부상자가 발생하여 인명구조를 해야 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승객이나 동승자가 있는 경우 적절한 유도로 승객의 혼란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아비규환의 상태에서는 피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인명구출 시 부상자, 노인, 어린아이 및 부녀자 등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구조한다.
 - 정차위치가 차선, 노면 등과 같이 위험한 장소일 때에는 신속히 도로 밖의 안전장소로 유도하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우선 응급조치를 한다.
 - 야간에는 주변의 안전에 특히 주의를 하고 냉정하고 기민하게 구출유도를 해야 한다.
 - **후방방호** | 고장발생 시와 마찬가지로 경황이 없는 중에 통과차량에 알리기 위해 차선으로 뛰어나와 손을 흔드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
 - **보고** | 회사, 경찰, 공제조합·보험회사 등에 다음 사항을 연락한다.
 - 사고발생지점 및 상태
 - 승객수, 부상자수 및 부상정도
 - 회사명
 - 운전자 성명
 - 연료 유출여부 등
 - **대기** | 대기요령은 고장차량의 경우와 같이 하되,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부상자가 있는 경우 응급처치 등 부상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후속 차량에 긴급후송을 요청해야 한다. 부상자를 후송할 경우 위급한 환자부터 먼저 후송하도록 한다.

② 차량고장 시 운전자의 조치사항

- 교통사고는 고장과 연관될 가능성이 크며, 고장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여러 가지 이유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정차 차량의 결함이 심할 때는 비상등을 점멸시키면서 갓길에 바짝 차량을 밀착해서 정차한다.
 -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옆 차로의 차량 주행상황을 살핀 후 내린다.
 - 비상전화를 걸기 전에 차량 후방에 경고반사판을 설치해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주위를 기울인다.
 - 또 비상주차대에 정차할 때는 다른 차량의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차한다.
- 후방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 대기 장소에서는 통과차량의 접근에 따라 접촉이나 추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 이를 위해 고장차량임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시 또는 눈에 띄게 한다.
 - * 도로교통법 제66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표지(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따른 고장 자동차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해야 한다. 밤에는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구조차 또는 서비스차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 내에 대기하는 것은 특히 위험하므로 반드시 후방의 안전지대로 나가서 기다리도록 유도한다.

③ 재난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사항

- 운행 중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한 후 즉각 회사 및 유관기관에 보고한다.
- 장시간 고립 시에는 유류, 비상식량, 구급환자발생 등을 즉시 신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근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한다.
- 승객의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다.
 - 폭설 및 폭우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응급환자 및 노인, 어린이 승객을 우선적으로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 재난 시 차내에 유류 확인 및 업체에 현재 위치를 알리고 도착 전까지 차내에서 안전하게 승객을 보호한다.
 - 재난 시 차량 내에 이상 여부 확인 및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차량을 대피한다.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

- **급박한 위험 시 대응훈련** | 사고, 차량고장, 버스 잭 등의 급박한 상황을 상정한 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위험 예지 트레이닝** | 드라이브 레코더의 영상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위험 예지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10)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 절차

평가기준

① 안전관리 능력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이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차량관리계획, 근로자 관리계획 등

② 서비스 개선 능력

- 버스이용자 만족도 개선계획, 근로자 후생복지 추진계획 등

③ 경영효율화 능력

- 재무건전성, 비용의 적정성, 비용관리 등

평가절차 및 결과

- 평가항목별 평가는 상·중·하로 하여 모든 평가항목에서 중 이상의 평가를 받은 업체 중에서 선발토록 한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중	하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 안전예산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래신고·보조절차 유무 - 재래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이행상황보고 및 점검

- 반기별로 기준과 절차가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보고토록 한다.
- 평가결과보고 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구하며 개선 미 이행 시 계약을 해지토록 한다.

3.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1) 사업장별 재해 보고(종사자 전파)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 신고 및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피해의 확대·재발을 방지한다.

(2)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추진체계의 적절성 점검계획

사고원인규명회의 개최

-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규명회의를 연 4회 개최한다.

사장 등과 안전책임자 좌담회 개최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장 등과 안전책임자가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반기 1회 개최한다.

이행추진체계 적절성 점검

-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점검한다.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 이행추진체계의 적절성 점검결과는 사장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계획을 수립한다.

제 3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나. 건축물의 수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주유소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을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것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받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 점검 등의 실시
 -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점검·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
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
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
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
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
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
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
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
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
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
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
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
비·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
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26.] 제16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저자약력 |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

일본 주오(中央)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박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계획 수립 매뉴얼

2022년 6월 발행

발행인 | 김 기 성

발행처 | 한국운수산업연구원

[0670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35 전국버스회관 4층

Tel : (02)3474-6888, 9777 Fax : (02)3474-133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계획
수립 매뉴얼**